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5월 1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립학교”라는 용어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변경되었지만, 현행 조례에는 여전히 이전 용어가 남아 있어 행정 용어의 일관성과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기존의 “전대”라는 용어가 “사용·수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령과 동일한 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사용·수익”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첫째,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학교”라는 용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수정하였습니다.
 - 둘째, 제10조 및 제14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대” 관련 표현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사용·수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셋째,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1 등에서 나타나는 오기를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